

연구윤리지침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한성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정의) 연구 활동이라 함은 연구의 기획과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, 연구의 심사와 평가, 연구성과의 보급·적용·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.
- 제 3 조 (적용 범위) ① 이 지침은 본교 전임교원에 적용된다.
②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- 제 4 조 (준용) 본교 소속의 연구원, 대학원 및 학부생, 그 밖에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 활동에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.

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

- 제 5 조 (원칙)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.
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.
⑤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- 제 6 조 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 2.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
 3.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 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
6.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

제 7 조 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) 일반부정행위 검증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며,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 다만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(2025.1.13.)

제 8 조 (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)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(실험의 재료·과정·결과, 관찰·현장조사·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)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.(2025.1.13.)

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,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되는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거나 특허출원 시 신규성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등 대학 또는 연구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2025.1.13.)

④ 연구자료, 연구노트 등의 소유, 관리 등의 책임, 보존, 폐기,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연구노트 관리 규정」 으로 정한다.(2025.1.13.)

제 9 조 (연구성과의 사용)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,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,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, 연구데이터,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·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·출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10 조 (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)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.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.

제 11 조 (관련 법규 준수 의무)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제 12 조 (본교의 역할과 책임) ①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본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윤리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조사결과의 제출)

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에 따른 증인, 참고

인,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은 생략할 수 있다.(2025.1.13.)

1.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(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(2025.1.13.)
2.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(2025.1.13.)
3. 관련 연구개발과제명(2025.1.13.)
4. 관련 증거자료(2025.1.13.)
5. 조사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성명, 전문분야(2025.1.13.)
6. 증인, 참고인,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, 전문분야(2025.1.13.)
7.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(2025.1.13.)
8.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조치계획(2025.1.13.)

제 3 장 학문교류

제 14 조 (연구결과 발표의 원칙)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저자)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, 개념 정립, 연구수행,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·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·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·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
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·자료의 수집,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저자의 소속기관 표시)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.

제 17 조 (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) ① 특수관계인(자신,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·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
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본교 관련부서와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.

③ 기관은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) ①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,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(2025.1.13.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(2025.1.13.)

가.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(2025.1.13.)

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(2025.1.13.)

다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(2025.1.13.)

라.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(2025.1.13.)

② 본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2025.1.13.)

제 19 조 (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)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,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.

2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② 본교는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」에 규정된 사항과 「산업기술보호법」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2025.1.13.)

제 20 조 (학술지 투고,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) ①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, 해당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, 해당 학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이해상충

제 21 조 (이해상충 정의) 이해상충이란 연구자가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.

제 22 조 (관리의무)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,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- ②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.
- ③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④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링하고,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.
- ⑤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과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.

제 5 장 인간 대상 연구

- 제 23 조 (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)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,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.
-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,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.
 -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연구대상자는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.
 - ④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⑥ 연구자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 24 조 (충분한 고지와 서면동의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, 내용, 방법,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,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. 단, 이해능력,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친권자, 배우자 등 적법하게 연구대상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- 제 25 조 (연구대상자 보호) ①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.
-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,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-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생명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.
 -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.
- 제 26 조 (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본교는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, 조사·감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 27 조 (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) ① 인간 대상 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.
- ②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의 심의 및 연구과정 감독에 대하여는 본교 '생명윤리위원회 규정'에 따른다.(2025.1.13.)

제 6 장 동물실험

- 제 28 조 (동물 실험 연구의 원칙) ① 인간 외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경우, 연구자는 동물의 윤리적 사용,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연구자는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동물 실험 연구자는 실험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동물 실험 연구자는 이러한 실험이 공중보건, 과학의 진보, 사회 공공의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연구자와 학생은 의무적으로 동물 대상 실험과 관련된 규정, 인도적 취급, 안전관리, 건강 위험 요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⑤ 실험 동물의 안전한 관리, 보호, 사후처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'실험동물에 관한 법률'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.(2025.1.13.)

제 7 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

- 제 29 조 (연구자 권익보호)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,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
 -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 지역,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,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.

④ 본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성희롱·성폭력,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제 30 조 (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)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,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, 데이터수집·저장·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32 조 (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,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33 조 (기타)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지침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